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장병내일 준비적금이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간부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 및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취지의 ‘장기간부 도약적금사업(신설)’의 근거 마련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될 (제62조의3 신설) 예정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자로 장기선발(임관)된 장교 및 부사관으로 규정(안 제66조의33제1항)

나.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66조의33제2항)

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부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조건 등을 반영(안 제66조의3제3항·제4항·제5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재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
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의 가입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일로 한다) 전일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적금의 만기일 이전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2항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지원하지 않는다.

⑤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재정지원금을 수령 후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고 전역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2항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제적되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환수한다.

⑥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0조의33(금융상품의 재정지원)</u> ① <u>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u> <u>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u> <u>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u> <u>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u> <u>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사람</u> ② <u>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법 제62조의3</u>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금융상품의 가입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역일 또는 제적일로 한다) 전날까지의 금융상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지원하지 않는다.

④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적금의 만기일 이전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2항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재정지원에 따

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지원
하지 않는다.

⑤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재정지
원금을 수령 후 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무복무기
간을 마치지 않고 전역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4
호 및 2항 또는 법 제40조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에 따라 제적
되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지
원금(재정지원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한다)을 환수한다.

⑥ 금융상품의 가입자가 제2항
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
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14